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정국장 진정래)

가. 제안이유

- 용역과제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에 따른 해촉사유 개정(안 제6조제3항)
-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결과 공개(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묵)

-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 할 것을 대비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조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신설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의2에서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면서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의2에서 조례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 또한, 안 제10조의 2 「용역결과와 공개」 를 신설한 것은 2017.10.1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용역결과를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5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용역과제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역과제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용역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인권·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 10. 4. ~ 10. 24.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를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할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의 임기) ①·② (생략)</p> <p>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u>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u><신설></u></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u></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u></p> <p>2. <u>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u></p> <p>3. <u>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할 경우</u></p> <p>② <u>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u></p>

<신 설>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